

가축분뇨 자원화 뉴스

홍보부

농림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 확정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자연순환농업이 올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종농업계의 참여도가 높아 가축분뇨 자원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1월 30일 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학계, 관련기관·단체, 지자체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고 지원사업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대상자로 당진축협 등 전국 19개 경영체에 총 319억원의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융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사업계획의 80%를 융자지원하며 연리 2% 3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올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는 △당진축협 △익산군축협 △함양농협 △영광축협 △제주양돈 △남면농협 △거창북부농협 △연천농협 △남부안농협 △춘향골농협 △서천농협 △벽제농협 △남평농협 △제주축협 △벽진농협 △용성농협 △양양영농조합 △고양축협 △모기농협 19개소이다.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는 퇴·액비를 이용해 생산한 농산물 출하에 따른 출하선금금, 퇴·액비를 이용해

생산한 농산물 매취자금, 퇴·액비를 이용해 생산한 조사료 판매와 퇴비 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퇴·액비 이용확대 및 자연순환농산물 생산을 위해 임차한 농지 임대료, 퇴·액비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 및 교육·홍보비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지역농협이 12개소로 220억1천1백만원이 지원되며, 지역축협은 6개소로 93억8천7백만원 지원, 영농조합은 1개소로 5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 농림부는 사업별 소요자금을 지난해 실적과 올해 계획을 감안하여 퇴비화의 경우 4천톤 생산 기준 15억원, 액비화는 1만톤 생산기준 15억원으로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했다.

한편 올해 총 지원계획 400억원 중 나머지 81억2백만원은 지난해 사업대상자중 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사업 확대계획이 있는 경영체에 인센티브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상철 축산자원순화과장은 "자연순환농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올 하반기에 전년도 사업대상자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우수한 경영체에 추가자금 지원이나 기계·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자연순환농업 홍보 강화

농림부가 자연순환농업 홍보 및 교육 계획을 마련했다. 농림부는 올해 촉발기금 3억원을 투입하여 자연순환농업을 더욱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퇴·액비 시범포 운영사업으로 △지역단위 시범포 운영(60개소) △퇴·액비 시범포 운영 평가회 △시범포 운영사례집 발간·보급을 추진하고, 양돈협회 주관 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연순환농업 장터 개설·운영 △자연순환농업 전문경영체 연찬회 △우수사례집 제작 보급 △자연순환농업 포럼 개최 등 캠페인 및 세미나를 통하여 축산 및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축산시설 제외해야

최근 환경부가 마련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 밖에 위치한 악취배출시설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강제 폐쇄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 양돈농가들이 악취방지법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악취관리지역 밖에서도 설치신고를 해야만 하는 악취배출시설에 '축산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는 축산시설이 농업의 일부분으로써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악취와 달리 농촌에서 농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냄새로써 유럽 등 외국에서는 별도로 관련 규정을 만드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며 악취관리지역 밖 규제대상에 축산시설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악취시설신고 및 악취방지계획서 제출능력이 부족한 전국의 많은 중소규모 농가들이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적용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는 양돈농가들에게 양돈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제8조항에서 악취관리지역 밖의 주요 악취배출시설들도 악취관리지역 내에 있는 시설들처럼 악취저감계획이 포함된 설치신고를 시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었다.

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 참여 열기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가 참여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양돈협회(회장 김동환)에 따르면 올해 '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에 참여할 10개 지부가 확정됐다. 지난 2006년 이 대회를 처음 시작한 경기도 이천시지부(지부장 최영수)를 비롯해 △충북 청원(장성순) △충남 예산(차창회) △전북 순창(이운택), 정읍(김공수) △전남 영광(한용석) △강원 철원(성시명) △경북 경주(배만용), 영천(권춘구) △경남 창녕(여영성) 등이다.

지난해 이천과 여주, 영광, 경주, 예산 등 5개 지부가 참여했던 것을 감안할 때 그 참여지역이 2배 늘어나 참여지역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 올해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포함되는 등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2천만원의 예산을 배정, 경진대회 시상식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토론회 등과 연계한 전국 연찬회 등을 지원할 방침이어서 자연순환농업경진대회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기대 및 관심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 2년간 자연순환농업경진대회가 치러지면서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해당지역 경종농가의 부정적 시각 해소와 주변 지역에 대한 홍보, 축산농가의 고품질 퇴·액비 생산 의욕고취 등의 성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양돈협회는 이에 따라 각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대회 운영방안 마련과 참여 시·군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및 오는 8~9월 사업추진 중간점검 과정을 거쳐 10~11월경에는 농산물 평가와 시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지부가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행사로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해양배출 중단시기 법률 명시 '철회'

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을 법적으로 명시하겠다는 해양당국의 방침이 철회되고 가축분뇨 성분검사도 6개월 연기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당초 개정(안)에 포함, 양돈업계의 우려를 자아냈던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 시기 명시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대해 해양배출 중단 시기의 법적 명시를 반대해온 대한양돈협회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돈협회는 "현실적으로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양돈업계도 2012년 중단을 예상으로 해양배출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그 시기를 법적으로 못 박아 놓았다면 이때까지도 일부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물량이 남아있을 경우 접근방법의 한계는 물론

자칫 해당 농가를 범법자로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 양돈업계의 의견을 수렴, 가축분뇨 성분검사를 오는 8월 22일까지 6개월 연장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기준만 제시했던 기존과는 달리 새로운 시행규칙에서는 25개 성분검사 의무화 및 검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해수부의 방침이 그대로 반영돼 양돈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해양배출량 큰 폭 감소

지난해 가축분뇨 2백2만㎥ 투가… 전년비 22.6% 감소

지난해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배출된 가축분뇨는 2백1만9천㎥로 2006년의 2백60만7천㎥ 보다 무려 22.6%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방침 시행 원년으로 감소율이 5.0%에 머물렀던 지난 2006년 보다 그 감소폭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특히 전체 해양배출 물량 가운데 가축분뇨가 차지하는 비중도 27.2%로 전년보다 2.4%p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6년의 경우 가축분뇨 해양배출 물량은 줄었으나 그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높아진바 있다.

해경은 이 같은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감소가 자원화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신고필증 자진반납이 증가하는 등 육상에서의 처리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데 따른 성과로 풀이했다.

축분뇨 해양배출 부가세 환급 '늑장'

면세 확정 6개월 넘어… 해양배출업체 환급 기피

세무당국의 가축분뇨 해양배출에 대한 부가세 면세 방침이 확정된 지 6개월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납부금

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지 않아 양돈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이에 따라 빠른시일 내에 부가세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적인 협조를 해양배출업계에 요구하고 나섰다.

양돈협회와 양돈농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초 '가축분뇨 해양배출도 부가세 납부 대상'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지역 해양배출업체들의 경우 가축분뇨 해양배출 양돈농가에게 부가세를 부담토록 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해양배출업체들은 이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양돈업계 등의 강력한 반발을 사며 논란을 거듭한 끝에 재경부가 지난해 7월 먼저 확정방침을 내림으로써 양돈농가들은 그간 납부해온 부가세를 환급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해당 양돈농가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한푼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관련업체들은 "이는 부가세를 납부한 가축분뇨 해양배출 농가별로 지급액이 차이가 있는데다 각종 서류절차마저도 복잡해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양돈업계에선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반면 관할세무서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번거롭기까지 한 환급 작업을 해양배출업체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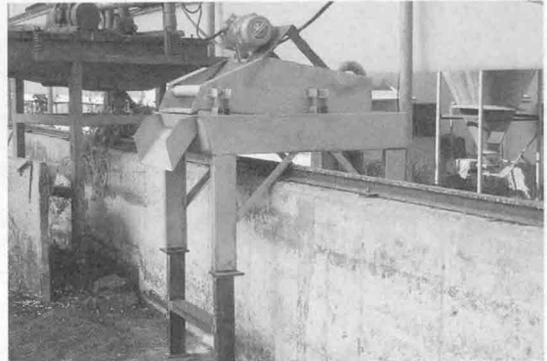
'가축분뇨 · 환경담당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개최

농림부는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난 2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간 제주도 헤비치리조트에서 '가축분뇨 및 환경담당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해당공무원간 업무협조 체계구축은 물론 가축분뇨 처리 및 자연순환농업 추진시 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제도변화 등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까지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농림부와 환경부의 관련 정책방향 및 축산과학원의 자연순환농업 연구추진현황발표와 함께 가축분뇨법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분임토의 등이 진행됐다.

가축분뇨처리 기계 · 장비 가격정보집 발간



농림부는 가축분뇨처리 기계 · 장비의 가격, 규격, 성능, 처리능력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된 '가축분뇨처리 기계 · 장비 가격정보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 책은 농가들이 가축분뇨처리 기계 및 장비의 제품특성과 가격 등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왔은 고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A/S 및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간된다.

이 책에 제품을 수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02-807-8415)에 2월말까지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양돈**

